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

2024. 12. 19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이하 “세칙”)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이하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이하 “대구경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대구경북본부에서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의 지원대상은 <별표1>에서 정한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2>에서 정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3조(사후심사 자료제출)** 대구경북본부장은 절차 제5조에 따른 사후심사시 금융기관 결제모점별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대출금원장(사본)
2.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사본)
3. 금리산출표(사본)
4. 지원대상업체 입증 서류(유관기관 인증서 및 추천서 등)
5. 기타 대구경북본부장이 요청한 서류

**제4조(평가관리 기준)** 절차 제6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금리 감면폭(30%)
2. 제출자료의 정확성(40%)
3. 제출기한 준수 여부(30%)

**제5조(기타 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 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 등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10. 10. 22)**

이 기준은 2010. 11월 첫영업일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7. 14)**

이 기준은 2011. 8월 첫영업일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0. 25)**

이 기준은 2011. 11. 1일부터 시행하며, 이 기준에 의한 한도배정 개시일은 2012. 1월 첫 영업일로 한다.

**부 칙 (2011. 12. 27)**

이 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24)**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한도배정 개시일은 2012년 8월 첫영업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앞 배정된 대구경북본부 총액한도대출은 종전 기준에 따른다.

**부 칙 (2013. 9. 3)**

이 기준은 2013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8. 26)**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한도배정 개시일은 2014년 11월 첫 영업일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앞 배정된 대구경북본부 중소기업지원자금은 종전 기준에 따른다.

**부 칙 (2015. 4. 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 부 칙 (2015. 5. 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5월 1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15. 6. 26)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5년 8월 1일(2015년 10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지원부문의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대상 확대는 2015년 7월 1일(2015년 9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 부 칙 (2015. 10. 1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 11월 2일(11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6. 6. 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 7월 1일(2016. 5월 대출실적)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책 호응도 평가등급 산정대상 조정은 2016. 4/4분기 전략지원부문 사전한도 배정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 부 칙 (2017. 6. 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7월 1일(2017년 9월 배정)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 부 칙 (2017. 9. 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9월 1일(2017년 11월 배정)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대구경북본부장이 부여한 금융기관별 사전한도는 2017년 12월 배정시까지 적용한다.

### 부 칙 (2018. 4. 1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5월 1일(2018년 7월 배정)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 부 칙 (2019. 6. 1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7월 1일(2019년 9월 배정)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 부 칙 (2019. 9. 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9월 2일(2019년 11월 배정)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지원부문의 적용례) 제6조의 개정기준은 2019년 9월 1일 이후 취급하는 대출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동 부칙 제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 부 칙 (2019. 12. 27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1월 1일(2020년 3월 배정)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 부 칙 (2020. 7. 21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8월 1일(2020년 10월 배정)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 부 칙 (2021. 1. 2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5월 3일(2021년 7월 배정)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 부 칙 (2021. 9. 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9월 1일(2021년 11월 배정)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지원부문의 적용례) 제6조의 개정기준은 2021년 9월 1일 이후 취급하는 대출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동 부칙 제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2. 7. 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9월 1일(2022년 11월 배정)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3. 3. 2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4월 1일(2023년 6월 배정)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3. 8. 3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기준 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1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2024년 3월 배정)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4. 3. 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4월 1일(2024년 6월 배정)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4. 12. 1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1월 1일(2025년 3월 배정)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지원대상업체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sup>1)2)</sup>**

지원대상코드	지원대상	지원부문	선정기준
A2	벤처기업	일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협회 등)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중소기업(창업 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A3	혁신기업	일반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창업 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제2항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신기술인증(NET)을 획득한 기업(창업 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 국제특허 출원·등록 기업 및 생산활동에 사용중인 국내특허 <sup>3)</sup> 보유 기업(등록일부터 10년 이내, 창업 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함) - 기술신용평가기관(은행자체 TCB포함)이 발급한 기술신용평가서(TCB)를 여신심사자료로 활용하여 대출을 취급한 기업으로 평가대상 기술을 생산활동에 사용중인 기업(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 후 7년 초과 기업에 한하며 기술평가등급(T) 3등급 이상을 요건으로 함)
A4	녹색기업	전략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에 따른 녹색기업, 환경표지·환경성적표지(EDP) 인증제품 생산 중소기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 우수재활용제품인증(GR) 제품 생산기업
A6	추천기업 <sup>4)</sup>	일반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경북지역 상공회의소 선정기업(Pre-스타기업, 스타기업, 리딩스타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프라이드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대구산업대상 수상기업 등)(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거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상법상 회사 -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가 인증한 예비사회적기업 중 상법상 회사 -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입주확정기업 포함)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공동브랜드(브랜드 K) 인증기업
A7	지역특화산업영위기업	전략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73209)」 또는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영위 업체 중 자체 브랜드제품(상표등록증 보유)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 -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공동상표(OLLST 등), 지역공동브랜드(쉬메릭, 실라리안) 사용기업
A8	지역전략산업영위기업	전략	- 대구경북본부 관할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별표1-1>의 업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혁신기업, 소재·부품 생산기업 - 대구국가산업단지내 국가 물산업클러스터(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 입주(입주확정 포함) 기업 및 경상북도청이 선정한 물산업 선도기업(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 선정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선정 고용우수기업(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일자리창출 우수기업·청년고용증진 우수기업 및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선정일로부터 2년 이내)

지원대상코드	지원대상	지원부문	선정기준
A9	전입기업	전략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대구경북본부 관할지역으로 이전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제조업(C) 영위기업에 한함)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중 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증설된 사업장이 대구경북본부 관할지역에 위치하는 중소기업
A10	수출관련기업	일반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선정 수출유망중소기업
A11	소재·부품 생산기업	일반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거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A13	농림수산업 관련 기업	전략	-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01~03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상시근로자수 500인 이하 농림축산업자·농어업법인 포함)
		일반	- 농림어업 관련 사업(표준산업분류 01~03 이외)을 영위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A14	명절 및 재해 자금 등 <sup>5)</sup>	일반	- 명절, 자연재해 및 지역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기업
A15	기타 지원기업 <sup>5)</sup>	일반	- 위의 지원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해, 거래업체부도 등으로 본부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지원기간 1년, 지원한도 10억원, 지원기간연장 불가)
A16	경기부진 및 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특별	- 대구경북본부 관할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별표1-2>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직전연도 매출액 1억원 이상) - 밀집지역 중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선정한 지원필요지역 소재 중소기업(확인서는 테크노파크가 발급)

- 주: 1) 지원대상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2) 금융기관의 대출실행일이 관련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
- 3) 대출일 당시 등록이 완료된 특허만 인정하며, 특허 보유권자로 대출업체(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가 포함되어야 함. 또한 특허명 및 특허사용 생산품목이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과 밀접히 연관되어야 함
- 4) 유관기관 추천업체의 경우 업종별 자금지원 형평성, 각 지역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업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5) 각 지역본부장이 지원비율·지원한도·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대구·경북지역 지역전략산업 지원 분야**

산업분류	표준산업 분류코드	업 종
차세대에너지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76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35112	수력 발전업
	35114	태양력 발전업
	35119	기타 발전업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로봇, 스마트제조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바이오·의료기기, 헬스케어	21101	의약품 화학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의학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첨단그린신소재	20129	기타 기초 무기 화학 물질 제조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23995	탄소섬유 제조업

산업분류	표준산업 분류코드	업 종
UAM· 항공·모빌리티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ABB, 전자·정보통신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 기판 제조업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1210	유선통신업
	61220	무선 및 위성통신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반도체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산업분류	표준산업 분류코드	업 종
기타 산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5924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926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대구·경북지역 특별지원부문 지원 대상업종<sup>1)</sup>**

업종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KSIC코드, 제10차)	
도소매업	464	생활용품 도매업
	465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467	기타 전문 도매업
	473	가전제품 및 정보 통신장비 소매업
	47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476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운수업	492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3	도로 화물 운송업
	494	소화물 전문 운송업
	521, 529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음식숙박업	551, 559	숙박업
	561, 562	음식점 및 주점업
여행업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여가업	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주: 1) 의약품 및 의료기기(KSIC 46441, 46442, 46592, 47811, 47812), 주유소(KSIC 46711, 46712, 46713), 주차장(KSIC 52915), 주점(KSIC 56211, 56212, 56213, 56219)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대구경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대상 제외업종<sup>1)</sup>**

업종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제10차)
의약품 및 의료기기 도소매업	46441 의약품 도매업 46442 의료용품 도매업 46592 의료 기기 도매업 4781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47812 의료용 기구 소매업
운송관련 서비스업	52915 주차장 운영업
주점업 <sup>2)</sup>	5621 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 서비스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731 수의업
교육 서비스업	855 일반 교습학원
보건업	86 보건업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1 이용업 및 미용업 96122 마사지업 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주: 1) 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

2) 상호명에 '포차'·'대포'·'호프'·'바'·'맥주'·'비어' 등이 포함된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